

● 제302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578)**

2021. 9.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김경우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578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경우 의원외 9명
- 나. 제안일 : 2021. 8. 10.
- 다. 회부일 : 2021. 8.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을 위한 필수 인력이나, 코로나19와 저출생 등의 위기로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이 나빠지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가 어려운 실정임.
-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보육인의 날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행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보육인들의 화합과 보육 정보교류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육인의 날 등 보육인들의 화합과 보육 정보교류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제22조제1항제11호를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보육인의 날 등 보육인들의 화합과 보육 정보교류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내용임.

2 주요사항 검토

□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 개정안(안 제22조제1항)은 새로운 호를 신설하여 ‘보육인의 날 등 보육인들의 화합과 보육 정보교류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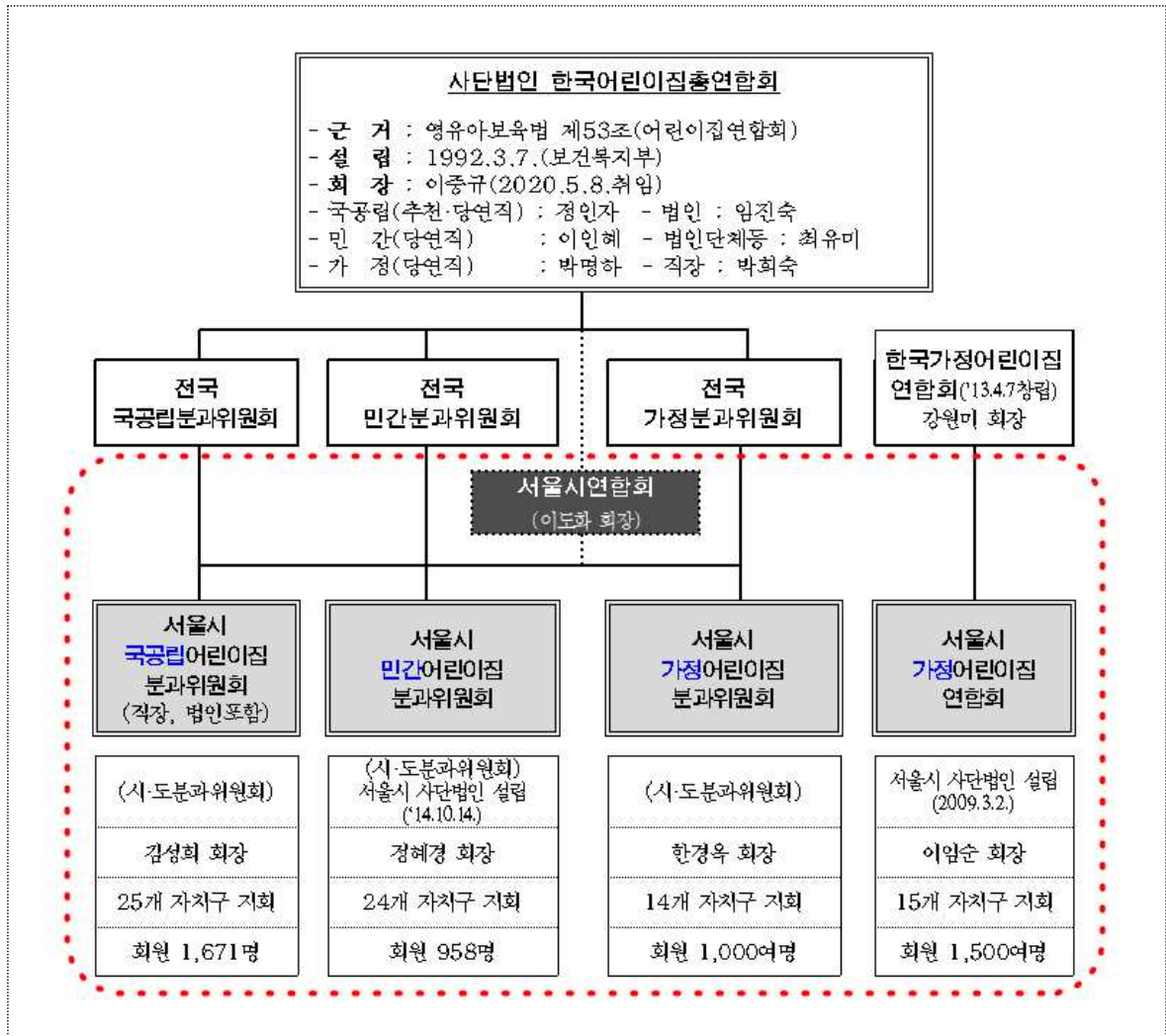
1. ~ 10. (생략) <u><신설></u>	1. ~ 10. (현행과 같음) 11. <u>보육인의 날 등 보육인들의 화합과 보육 정보교류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u>
11. (생략) ②·③ (생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보육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 우수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사진 시상, △우수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사진 입상작 전시, △보육관련 동영상 시연 및 식전행사(공연) 등을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분과위원회 등이 번갈아가면서 맡아 시비 보조금(일부 자부담 별도)으로 수행해 왔음.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일시	주최기관	장소	참여인원	표창대상자	예산집행
2020년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코로나19로 행사없음		감사패 1 시장상 136 상장 20(공모전)	563만원
'19.10.28. 15시~17시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공동 개최	신청사 다목적홀	600여명	감사패 1 시장상 136 의장상 10 상장 20(공모전)	2천만원
'18.12.20. 16시~18시	서울시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신청사 다목적홀	500여명	감사패 1 시장상 136 상장 20(공모전)	2천만원
'17.11.15. 14시~16시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우리은행 본점 대강당	700여명	감사패 3 시장상 136 상장 20(공모전)	2천만원

〈어린이집연합회 조직도〉



- 한국어린이집연합회는 「영유아보육법」제53조¹⁾을 근거로 설립된 법정단체로 같은법제41조²⁾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나 대표자 등

1) 「영유아보육법」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②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2) 「영유아보육법」제41조(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① 법 제53조에

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유형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는 한국어린이집연합회의 서울시 지부로 각각의 어린이집 유형을 대표하여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별도로 운영 중에 있음.

※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소속 가정어린이집분과위원회와 별개로 비영리민간단체인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어, ‘보육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을 협업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³⁾ 및 같은법 시행령⁴⁾에 따르면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은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12. 8.>

②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어린이집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1. 12. 8., 2012. 2. 3., 2016. 9. 20.>

1.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의2.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분과위원회

3. 직장어린이집 분과위원회

4. 가정어린이집 분과위원회

5. 협동어린이집 분과위원회

6.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11. 12. 8.>

1. 보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홍보

2. 영유아의 권익보호

3. 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

4. 그 밖에 어린이집 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④ 연합회의 회원 자격,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31.>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09. 12. 31., 2011. 12. 8.]

3)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에 드는 비용으로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각호 중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면 ‘법인·단체’에 예산 보조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보육인의 화합과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동 개정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개정안 외의 부분인 현행조례 제22조제1항에서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모든 보육시설”로 명시하고 있어 사단법인인 어린이집 연합회 등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보조금 지원 대상을 보육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 할 것임.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6. 4., 2015. 5. 18.>

[전문개정 2007. 10. 17.]

4)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2. 3., 2013. 12. 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현행	개정안	수정제안안
<p>제22조(비용의 보조)</p> <p>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10. (생략)</p> <p><u><신설></u></p> <p>11.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2조(비용의 보조)</p> <p>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보육인의 날 등 보육인들의 화합과 보육 정보교류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u></p> <p>12. (현행 제11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비용의 보조)</p> <p><u>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1. ~ 10. (현행과 같음)</p> <p><u>11. (개정안과 같음)</u></p> <p>12. (현행 제11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3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긴급보육 및 방역 업무 등으로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의 격려와 표창 등을 통해 보육현장의 사기를 높이고 보육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취지에 맞추어 보육시설외에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이정화 입법조사관 (02-2180-8146)